

■ 국립학교 설치령 [별표 7] <개정 2023. 11. 16.>

사무국장 또는 총무처장의 분장사무(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)

명 칭	분 장 사 무
사 무 국 장 또 는 총 무 처 장	보안, 관인관리, 직원인사, 급여, 문서관리, 법무, 자체감사,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, 회계 및 결산,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, 각종공사 및 시설관리,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, 비상기획, 국립대학 운영 혁신 지원 보좌,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